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불합리한 현행 관세제도 개정 필요 국내 업체 경쟁력 갖도록 적극 지원해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는 기업의 원가절감과 직결되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사기, 카메라 생산업체들은 산업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세제도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사기업체는 '부분품과 부속품' (HS/9009.90.0000)에 속하지 않더라도 모두 복사기 부품으로 인정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다. 카메라 생산업체는 각기 입장이 다르지만 일단 부품 관세 인하와 광학유리(HS/7014.00.9020)의 무세화에 입을 모은다.

1. 복사기 업체

복사기 생산 업체에서 수입하는 부품 전용부품으로 인정해 세율 인하해 주길

현재 복사기 업체들은 '복사기 업체가 수입하는 부품은 모두 복사기 부품으로 인정해서 5%의 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ITA(정보기술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대두되고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HS/9009.90.0000)은 작년 까지 관세율 8%를 적용받았으나, ITA에 따라서 올해부터 5%로 내렸으며, 내년부터는 무관세가 된다.

문제는 복사기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HS/9009.90.0000)에 속하는 부품 외에도, 다른 세

번으로 분류돼 있는 많은 부품이 사용되는데, 다른 세 번의 부품은 여전히 관세율 8%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타이밍벨트, 스케너 와이어, 기어 및 스프링류



▲ 지난 5월 27일 한국광학기기협회는 산자부 관계자를 초청해 복사기 관련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ITA(정보기술협정)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43개국이 참가해 203개 정보통신기술 품목에 대해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 1997년 7월 1일부터 1 단계 시행. 정보통신분야도 바야흐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함. 관세장벽이 없어져 수입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

1996년 4월 미국, 캐나다, 일본, EU가 컴퓨터, 반도체, 통신장비 등의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협정(ITA) 추진에 합의. 12월 WTO 각료 회의에서 타결. 우리 나라는 1996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각료 선언에 참여.

관세인하 시기 단축, 품목범위, 비관세장벽 제거 등 ITA 확대를 위해 1998년 2단계 정보기술협정(ITA II) 추진. 광학관련 제품 가운데 복사기(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HS/9009.12.0000)와 부분품과 부속품(HS/9009.90.0000)이 포함. 99년에 관세율 5%, 2,000년부터 0%.

<표 1> 복사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세목별 관세율

품명	관세		비고
	1999	2000	
부분품과 부속품(HS/9009.90.0000)	5.0%	0	동일하게 복사기 에 들어가는 부품 이지만 부분품과 부속품은 5.0%, 그 외는 8.0%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
플라스틱 제품류(HS/3926.90.1000)			
벨트류(HS/4010.29.0000)			
철판류(HS/7209.26.0000)			
철강재 와이어류(HS/7312.10.1099)			
Tapping screw(HS/7318.15.2000)			
Spring류(HS/7320.90.9000)			
Fan류(HS NO 8414.59.9000)			
Filter류(HS/8421.99.9090)			
Ball Bearing류(HS/8482.10.0000)			
Gear류(HS/8483.40.9010)	8.0%	?	
Gear류(HS/8483.40.9090)			
Clutch류(HS/8483.60.9000)			
Motor류(HS/8501.10.0000)			
Magnetic Clutch(HS/8505.20.0000)			
Heater quarte류(HS/8516.80.0000)			
circuit breaker(HS/8536.20.0000)			
power switch류(HS/8536.50.9090)			
할로겐 램프류(HS/8539.21.0000)			
wire harness류(HS/8544.41.9090)			
power code류(HS/8544.51.2090)			
counter류(HS/9029.10.1000)			

등 범용부품은 복사기에 필수적인 부품이지만 위의 <표 1>과 같이 각각 다른 세목에 분류돼 있어 복사기 전용 부품에 비해서 3%의 관세를 더 부담한다.

올해 수입하는 복사기 부품 가운데 부분품과 부속품(H.S NO 9009.90.0000)을 제외한 부품의 수입 예상 총 금액은 95억 3천 1백만원이다.(한국광학기기협회 추정) 현 상태에서는

모두 8%의 관세율을 부과받지만, 만일 5%가 적용될 경우 업체들은 2억 8천 7백만원을 절감하게 된다.<표 2> 참고

위와 같이 더 부과되는 관세는 업체들의 대외적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킨다. 비록 예상치 이기는 하지만 만약 3%가 덜 부과될 경우 2억 8천 여만원을 고스란히 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가공도가 높을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표 2〉 복사기 부품의 관세(HS.9009.90.0000 해당 품목 제외)를 5%로 적용할 경우 차액

단위:금액(백만원)

1999년 수입액(추정)	관 세		
	A. 현재의 8% 관세율 적용	B. 관세율을 5%로 인하할 경우(예상)	A-B
9,531	766	479	287

〈한국광학기기협회〉

수록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8%의 관세를 내고 수입한 원자재로 국내에서 만든 부품과, 5%의 관세율을 내고 수입해온 완성부품 중 어떤 것이 더 경쟁력이 있을지는 자명하다. 내년부터 복사기 전용 부품이 무세화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복사기 업체에서는 ASSEMBLY나 UNIT 형태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 영세한 국내 부품업체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결국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핵심부품의 국산화는 요원해진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체 감면 방안 모색중,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 상정될 예정

업체들은 일선 세관에 '복사기 생산업체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전용부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현 제도 아래서는 어쩔 수 없으니 세관을 탓할 수도 없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올 3월 23일

에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역차별적인 관세율 구조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광학기기협회도 5월 27일에 산자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복사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관련 업체에서는 여러 모로 자료조사를 하고 건의를 해왔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객관적인 제 3의 단체(예를 들자면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복사기 제작에 사용하는 부품임을 확인받으면, 세관에서 복사기 전용부품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세금 관련 사항을 민간 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ITA 양허관세 체계 이후 복사기업체와 똑같은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어 한가닥 희망이 보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재정경제부와 함께 현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반도체 장비, 복사기 등 가공도에 따라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

그러나 집행기관인 세관이 반발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내부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곤란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만일 개정안이 마련돼서 통과될 경우 복사기 업체의 부품 관련 관세 문제도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 카메라 업체

업체 따라 완제품 관세 요구 상반 부품 관세 인하 주장은 동일

복사기업체들이 처한 사항과 요구사항이 동일한 것과 다르게 카메라 업체들은 생산업체나, 수입업체나에 따라서 관세

에 대한 입장(특히 완제품)이 상반된다.

현재 국내에서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콤팩트카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메라에 주력해서 생산제품의 80% 가량을 수출하는 삼성항공산업(주). SLR에 주력하는 (주)아남인스트루먼트는 생산과 수입을 병행한다. 그외 업체들은 완제품 수입 업체들이 다.

그만큼 관세 개정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힘든 일이다.

삼성항공(주)

- 해외임가공 재수입물 면세 요구
- 현재 8% 적용되는 부품 관세 인하 전의

삼성항공산업(주)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994년부터 중국 천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왔으며 현재 6기종 정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 40%가 넘는 부품(핵심부품인 Shutter, IC 및 기타 부품)을 보내 중국에서 조달한 부품과 조립해 다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다. 삼성항공산업(주)은 이 제품들에 대해서 무관세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미 올 3월 15일부터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이 확대돼 전자·전기기류 제품은 시행중이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이를 수출물품과 HS 10단위가 일치하게

가공하여 재수입할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HS 10단위가 일치하는 경우로 하되, 원·부자재를 수출, 전자·전기류(85류)제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HS 10단위가 달라지더라도 가공 정도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바꿨다.

삼성항공(주) 구매기획유니트의 김태문 씨는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85류·전기기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다. 90류까지 확대해서 면제혜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모든 해외 임가공 제품을 면세해 줄 경우 국내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동해서 국내에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상태이다.

둘째로 다른 부품에 비해서 높은 카메라 관세율 8%를 낮출 것을 제안한다. 전자·전기 관련 부품은 무관세가 많고 (IC,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 85류에 해당), 세율이 인하된 상태인데 카메라 부품만 유독 몇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

보통 카메라에 사용되는 부품은 4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200여 개를 수입한다. 가장 많

은 것이 셔터와 파인더 부분, 렌즈 원소재로 재료비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관세 환급이나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면세도 생각해 볼 문제다. 수입했다가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공업물품은 다 관세가 환급되는데, 카메라는 제외되고 있다. 또 수출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나 거래선에서 판매가 부진한 경우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 다시 역수입할 때 면세(재수입 면세)해 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재수입 기간이 제한돼 있어 1년이 넘으면 고스란히 8%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최소한 2~3년으로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있다.

삼성항공(주)은 생산 제품의 80% 가량을 수출하면서 국내 카메라 산업이 무역 협자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주역임을 강조하며 국제 사회에서 좀더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세 부분에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아남인스트루먼트

- 부품의 완제품 세번 적용은 잘못
- 특소세, 세율 인하 기준 상향 조정 요구

수입선다변화해제를 앞두고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삼성항공산업(주)은 국내 카메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가 카메라 수입 규제를 위해서 콤팩트 카메라 완제품의 관세를 20%로 올리고, 부품 관세는 아예 없애거나 2~3%로 차등을 주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주)아남인스트루먼트 같이 수입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이다. 수입업체들은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를 5%나 3%로 낮춰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아남인스트루먼트 광학사업본부의 유철호 이사는 우선 수입 카메라 부품이 주요 부품이라는 이유로 완제품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드라이버나 펜치로 간단히

끝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인 조립 설비를 갖추고, 상당한 인원을 투입해서 조립하고 있느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비록 외국 브랜드 이지만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을 축적해서 국내 산업 발달에 기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행 특별소비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카메라는 100만원 이상인 고급 사진기와 50만원 이상인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에 30%의 세율이 붙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카메라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다. 옛날에야 카메라가 사치품이었지만 요즘은 생활수준이 많이 나아졌고 사진촬영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생활도구이다. 특소세를 부가해서 사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자는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밀수만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급사진기 특별소비세 부과기준(면세금액)을 조정해서 완제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관련제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은 현행 30%에서 15%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취재/신승미 기자

‘광학세계’ 원고모집

한국광학기기협회에서 발간하는 ‘광학세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학세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관련업체, 학계, 연구계 및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고모집 안내

1. 원고내용 : 연구논문, 회사소개, 제품소개, 국내·외 기술동향 등
2. 원고분량 : 제한 없음
3. 원고마감 : 수시접수중

※ 기사로 활용할 만한 좋은 소재를 알고 계신 경우 연락주시면 직접 방문해 취재하겠습니다.

연락처 : 한국광학기기협회 편집부 TEL.(02)581-2321 FAX. (02)588-7869

기획 취재

복사기·카메라 관세 개정 요구

관세변천사

관세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법으로 정해 놓은 기본 관세와 탄력관세(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출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편익관세, 물가평균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등)가 있다.

우리 나라 관세는 경제발전 단계에 맞추어 재정관세, 보호관세, 중립관세로 변천해 왔다.

1984년 이후 두 번에 걸친 관세인하 5개년 예시제를 통해서 관세율 수준을 1983년의 23.7%에서 1994년에 7.9% 수준으로 낮췄다.(당시 미국 6.3%, 일본 6.3%, 호주 13.2%, 대만 8.6%, 중국 35.9% 대의 관세 유지) 또 대

산업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산품 완제품의 세율을 가급적 8%로 유지하기로 했다.(원료 1~3%, 1차 가공품 5%)

1997년에 관세율체계의 정비(탄력관세 기본 세율화, 역관세구조 및 유사물품간 세율 격차 시정), 균등관세율구조의 미시적 조정, 정보화 추세(ITA)에 따른 관세율 변동결과를 기본세율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했다.

〈관세율 개편방향〉

50~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후
재정관세 → (국가 재정수입 확보)	보호관세 → (국가 전략산업 육성)	중립관세 (자원배분 왜곡 배제)

〈카메라 관세율 변경(1989~현재)〉

품명	연도	1989	1990~1991	1992	1993	1994 이후
렌즈를 통해 볼 수 있는 파인더(SLR)를 갖춘 것 (35mm 이하 롤필름용) 기타	20	16	13	10	8	
HS/9006.51.9000						
폭이 35mm의 롤필름용의 것	20	16	13	10	8	
HS/9006.53.9090						
부분품과 부속품	15	13	11	9	8	

〈복사기 관세율 변경(1989~2000이후)〉

* WTO협정관세(ITA)

품명	연도	1989	1990 및 1991	1992	1993	1994	1998	1999	2000 이후
정전기식의 사진식 복사기 (HS/9009.11.0000)	15	13	11	9	8	8 (*9.9)	*5	*0	
부분품과 부속품 (HS/9009.90.0000)	15	13	11	9	8	8 (*9.9)	*5	*0	